##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839 발의연월일: 2024. 9. 10.

발 의 자:정춘생·김준형·김재원

조 국・이해민・차규근

서왕진 · 신장식 · 김선민

황운하 • 박은정 • 이수진

복기왕 • 이상식 의원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난임치료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자는 연간 3일 이내(최초 1일은 유급)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난임치료는 실시 전 체질개선이나 배란유도 등을 위한 일정 기간의 사전 준비단계를 필요로 하고 있어 현행법이 보장하는 3일의 휴가 기간은 너무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임 없이 제기되었음.

이에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60일로 확대하고 이중 30일은 유급으로 하여 난임치료 전 과정에서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1항 등).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38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 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법률 제 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휴가,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8조의2제1항"을 "제18조의2제1항 · 제18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 본문 중 "3일"을 "60일"로, "1일"을 "30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난임치료휴가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제1항 본문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난임치료휴가를 사용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제18조의2에	지원) ①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	배우자 출산휴가, 제18조
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	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	
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출산전후	
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	
할 수 있다.	<u>.</u>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산	②
전후휴가급여등은 그 금액의	
한도에서 <u>제18조의2제1항</u> 또는	<u>제18조의2제1항ㆍ제18</u>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u> 조의3제1항</u>
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	
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	

에 연간 <u>3일</u>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u>1일</u>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신 설>

<u>②</u>·<u>③</u> (생 략)

<u>60일</u>
<u>30</u>
<u>일</u>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u>③</u> ・ <u>④</u> (현행 제2항 및 제3항
과 같음)